

제 6 장

원인기업 짓소에 대한 금융지원

현채발행에 의한 금융지원

짓소는, 미나마타병의 원인기업으로써, 미나마타병 인정환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불하여 왔습니다.

1972년쯤부터, 미나마타병 인정신청이 증가하기 시작함에 따라, 인정환자도 증가되어, 짓소는 보상금의 지불과, 석유파동 등으로 인해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경영이 어렵게 되어, 1977년말의 결산에서, 누적적자가 364억엔에 달하여, 동 회사의 경영의 현 상황에는 보상금의 지불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에 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1978년 6월 20일에 ‘미나마타병 대책에 대하여’ 내각양해에서 승낙을 받았습니다.

내각양해에서 받은 승낙중, 짓소에 대한 금융지원 조치로써, 원인자부담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미나마타병환자에 대한 보상금의 지불에 지장이 초래되지 않게 배려함과 동시에, 지역의 경제, 사회의 안정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하여, 구마모토현이 현채를 발행하여, 짓소에 빌려주어, 보상금의 지불에 보탬이 되도록 할 것이 결정되었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심중하게 심의한 결과, 긴급피난적인 조치로써, 짓소에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 국가에서 100프로 조치를 취할 것, 미나마타병 전반에 대하여 현채정액의 재정원조 등 8항목의 부대결의를 붙여서 국가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은, 결의 후 12월 27일, 짓소에 33억 5000만엔을 빌려주었습니다.

현채의 발행에 의한 짓소에의 금융지원 조치에 대하여, 과거 6번에 걸쳐서 재검토가 진행되어, 국가에서, 그때마다 미나마타병에 관한 관계관료회의를 개최하여, 현채의 계속발행으로 의한 금융지원을 구마모토현에 요청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은, 현의회 승낙을 받고 현채의 발행을 각자 3년간 연장하여, 1999년도에 보상금 지불분까지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구마모토현은, 이 인정환자에의 보상금지불을 위한 ‘환자현채’ 외에, 미나마타만공해방지사업에 동반한 짓소부담금의 입체를 위한 현채, 짓소의 설비투자자금을 위한 현채, 1995년에 정부해결책에 동반한 미인정 피해자들에 일시금지불을 위한 현채, 2000년 이후의 발본적인 금융지원에 동반한 특별대부를 위한 현채를 발행하여 융자하여 왔습니다. 2008년 3월말에 짓소와의 공적채무총액은 1544억엔(이자 포함 미환불액)으로 났습니다.

국비투입에 의한 발본적인 금융지원

정당및 관계성청에서 검토를 진행한 결과, 1999년 6월 9일, 미나마타병환자에의 보상 등으로 경영압박이 계속된 짓소에 대한 발본적인 금융지원의 정부안이 관계자에 제시되었습니다—자료참조

정부는 2000년 2월 8일에, 구마모토현의 승낙, 짓소의 ‘재생계획책안’ 등을 받고, 금융지원 조치를 내각회의에서 승낙을 받고, 정식으로 결정하였습니다—자료참조

지원조치에서 ① 국가는 20년간 계속하여 온 구마모토현이 발행하는 환자현채에 의한 융자를 축으로 한 지원방식을 2000년 도하반기 이후 폐지한다. ② 짓소가 정상이익으로부터 미나마타병환자에의 보상금을 지불한 후, 가능한 범위내에서 구마모토현에 대부금변제를 진행하고,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을 국가가 일반회계로부터 보조금과 지방재정조치에 의해 지불하고, 떠맡은 부분은 장래 짓소가 변제한다. ③ 미인정피해자에 지불한 일시금의 재원으로써 국가가 보조한 약 270억엔의 변제를 면제하기로 하였습니다.